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ING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ING 이머징마켓현지통화표시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ING 이머징마켓현지통화표시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ING 이머징마켓현지통화표시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ING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ngim.co.kr](http://www.ingi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0년 10월 2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년 11월 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목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4
1. 명 칭 .....	4
2. 모집 예정기간 .....	4
3. 모집 예정금액 .....	4
4. 펀드 존속기간 .....	4
5. 분류 .....	4
6. 집합투자업자 .....	4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4
1. 주요 투자대상 .....	5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6
3. 수익구조 .....	7
4. 주요 투자위험 .....	7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9
6. 운용전문인력 .....	9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	9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	10
1. 수수료 및 보수 .....	10
2. 과 세 .....	11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	12
IV 요약 재무제표 .....	13

# 간이투자설명서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명 칭

명 칭	ING 이머징마켓현지통화표시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협회코드 27375)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종류 C-i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27376	27377	27378	27379

### 2. 모집 예정기간

추가형으로서 모집개시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모집(판매)가 가능합니다.

### 3. 모집 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가 가능합니다.

-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4. 펀드 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개별투자자의 저축기간 혹은 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의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분류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집합투자업자

-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ING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빌딩6층 (대표전화 : 02-3703-9800)

-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 이머징마켓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인 ING (L) Renta Fund Emerging Markets Debt Local Currency의 집합투자증권에 50%이상 투자
②	채 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채권” 이라 한다)
③	자산 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자산유동화증권” 이라 한다)
④	어 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또는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 이라 한다)
⑤	장내파생상품	투자제한 참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 이라 한다)
⑥	장외파생상품	투자제한 참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 이라 한다)
⑦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대여
⑨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⑩	기타	<p>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p>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이머징 국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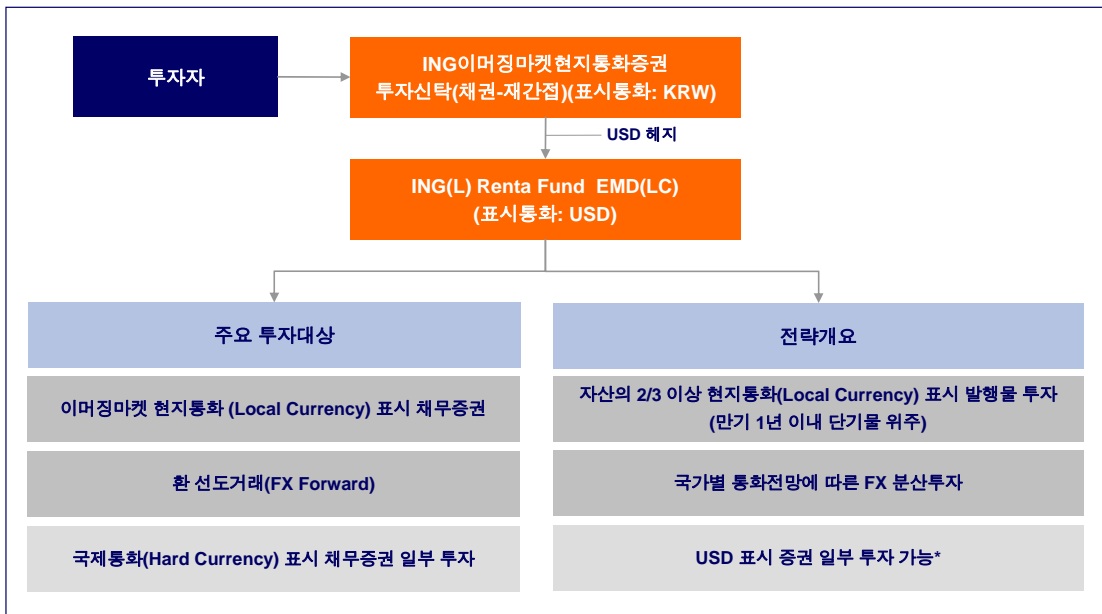
###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남미, 아시아, 중부유럽, 동부유럽 아프리카 이머징마켓 국가 통화로 표시되는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 증식을 추구합니다.

-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내용

펀드명	ING (L) Renta Fund Emerging Market Debt Local Currency
설정근거지	룩셈부르크
설정일	2000.10.10
설정액	2010.2.26 기준 USD 1,047mn (약 1조 1,768억원, KRW/USD=1124원 적용)
기준통화	USD
주요투자대상	자산의 2/3 이상을 이머징마켓 현지통화로 발행된 채무증권에 투자
펀드등급	모닝스타 등급 (2010.2.26 현재) ★★★★☆ (overall) ★★★★★ (3년) ★★★★★ (5년)
운용전략	- 이머징 국가 채권 및 현지통화에 다양하게 분산투자 - 만기 1년 이내 이머징국가 국채 위주 투자 - 신용 및 듀레이션 매매보다 단기시장 위주의 안정적 성과 추구 - 낮은 변동성 대비 지속적 수익 기대
운용회사	ING Investment Management B.V (Hague)

- 펀드의 구조



이 투자신탁은 이머징 마켓의 현지통화로 발행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JP Morgan Emerging Local Market Index Plus Composite Index 95% + BOK base rate 5%

※ JP Morgan Emerging Local Market Index Plus Composite Index 는 24개 이머징 국가 현지통화 표시 단기시장(Money Market Instrument)의 성과를 추적하는 지수입니다.

**(3)환헤지 관련사항**

**①환헤지 여부**

집합투자업자는 통화관련 장내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환헤지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환헤지전략의 실행여부 및 환헤지 실행비용 등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②환헤지방법**

환헤지는 통화선물, 통화선도거래 및 FX스왑을 활용할 예정이며, 환헤지 방법은 거래비용 및 환 프리미엄 및 디스카운트를 고려하여 선택할 계획입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격변동위험	신탁채산을 해외 이머징마켓의 현지통화표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 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채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 및 어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위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

	<p>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과생상품 투자에 투자 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과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b>환율변동에 따른 위험</b></p>	<p>이 투자신탁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해당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해외자산의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변화로 인해 투자 결과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후 원화의 가치가 해외 투자 대상국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외화자산의 가치를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져 손실이 발생합니다.</p>
<p><b>환헤지에 따른 위험</b></p>	<p>환율변동에 따라 해외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달러화와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과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p>
<p><b>부도 등의 위험</b></p>	<p>채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p>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b>국가위험</b></p>	<p>이 투자신탁은 해외의 이머징마켓 현지통화표시 채권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p>
<p><b>신흥국가위험</b></p>	<p>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p><b>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b></p>	<p>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p><b>자금송환 위험</b></p>	<p>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가 해외에 투자하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p>
<p><b>집중투자에 따른 위험</b></p>	<p>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p>
<p><b>거래상대방 및</b></p>	<p>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p>

신용위험	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다. 기타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이머징 마켓의 현지통화로 발행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 위험등급 기준이 3등급에 해당하는 중간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이머징 마켓의 채권에 투자하여 일반 채권형보다는 높지만, 주식형보다는 낮은 기대수익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며, 채권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이해하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ING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G자산운용은 투자목적, 투자전략 등을 고려해 투자신탁을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비고
1등급	매우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최저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 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저 30% 이상 최고 6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 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3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최저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중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펀드수	운용중인 다른 자산 규모	
박영열	73	수석 운용역	13	1,144억	- 부산대 무역학사 - 대한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팀 - 한국투자공사투자전략팀(자산배분/리서치) - ING자산운용 Multi-Asset Investment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Multi-Asset Investment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연평균수익률

신규펀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신규펀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A	2010-06-07	제한 없음
종류C	2010-06-07	제한 없음
종류C-e	2010-08-09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자
종류 C-i	미설정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동 조 제3항 제3호, 제10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국가채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을 매입하는 개인, 500억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C-i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 이내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환매수수료	<b>30일미만: 이익금의 10%</b>	<b>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b>			환매시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C-e	종류C-i	
집합투자업자보수	0.0800%	0.0800%	0.0800%	0.0800%	매3개월 후 급
판매회사 보수	0.7000%	1.0000%	0.8500%	0.0500%	
신탁업자 보수	0.0400%	0.0400%	0.0400%	0.04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70%	0.0170%	0.0170%	0.0170%	
기타 비용	0.0177%	0.0177%	0.0177%	0.0177%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8547%	1.1547%	1.0047%	0.2047%	
합성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 보수 포함)	<b>1.5747%</b>	<b>1.8747%</b>	<b>1.7247%</b>	<b>0.9247%</b>	
증권 거래비용	-	-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의 직전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합산한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작성일 현재 신규 설정하는 상품인 관계로 당해 투자신탁의 추정치 산출이 어려운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ING 이머징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계간접)의 실적을 추정치로 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실제비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 증권거래비용은 작성기준일 현재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합성 총보수 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보수(0.72%, 기타비용은 제외 함)를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A수익증권	235	583	954	1,996
종류C수익증권	197	609	1,046	2,260
종류C-e수익증권	181	561	965	2,094
종류C-i수익증권	97	303	526	1,167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A수익증권과 종류C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과 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습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ingim.co.kr">www.ingim.co.kr</a>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 매입 및 환매 절차

### -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 환매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가)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다) 환매대금은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간,%)		비고 (지급시기)
	종류A	종류 C, C-e, C-i	
환매수수료	<u>30일 미만 이익금의 10%</u>	<u>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u>	환매시

주1) 환매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2)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 IV 요약 재무제표

신규펀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